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NGO 활동조성금 교부요강

1996년(헤이세이 8년) 11월 14일
요강 제1호

(목적)
제1조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이하 "협회"라고칭함)의 역NGO활동에 대한 조성을 통하여 시민에 의한 국제협력의 추진과 시민의 국제화의식의 양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성대상의 사업)
제2조 조성대상의 사업(이하 "조성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지역내의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수준의 해외재해지역이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협력 및 원조활동으로 공적자금에 의한 원조가 아닌 사업
・지역내의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원조 등에 관한 사업으로 공적자금에 의한 원조가 아닌 사업
・지역내의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이사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
(조성금의 한도액)
제3조 조성금의 액수는 대상사업경비 2분의 1의 금액으로 하며 한 건당 5만엔을 한도액으로 정한다.
(조성금의 교부신청)
제4조 조성금을 교부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칭함)는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NGO활동조성금 교부신청서(양식 제1호)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성금의 교부결정)
제5조 이사장은 조성금의 교부신청이 있을 시, 해당신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내용을 심사하고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2 이사장이 조성금의 교부를 결정했을 시에는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NGO활동조성금 교부결정통지서(양식 제2호)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이사장은 조성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조성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계획내용의 변경 등)
제6조 조성금을 교부받은 자가 조성대상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 또는 중지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경미한 변경에 관해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성에 관한 조사 등)
제7조 이사장은 조성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고 또는 문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적보고)
제8조 조성금을 교부받은 자는 조성대상사업의 완료시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NGO활동조성금 실적보고서(양식 제3호)를 신속하게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9조 이사장은 조성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조성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통하여 조성금을 교부받았을 때
・조성금을 해당 조성대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조성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상기 세 항목 이외의 조성금 교부조건 또는 본 요강을 위반했을 때
2 이사장은 상기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조성대상사업 등의 해당된 취소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조성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내에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본 요강은 1996년(헤이세이 8년) 11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1호 (제 4조 관련)

_____년____월____일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이사장 귀하

신청자 주 소
명 칭
대표자 인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NGO활동조성금 교부신청서

재단법인미타카국제교류협회NGO활동조성금 교부요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조성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내용

1 교부신청금액 _____엔

1 교부신청금액 _____엔

3 첨부서류
- 단체개요 및 활동실적
- 조성대상사업의 개요 및 사업계획서
- 조성대상사업의 수지예산서
- 기타